

「검단 센트레빌 그랑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청약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가능하오니, 청약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 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026. 10. 16.(금)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41-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843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구분(약식 표기)		59A	59B	74	84A	84B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2	1	9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	4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5	5
	장애인	인천광역시	1	1	5	3
		서울특별시	1	-	2	2
		경기도	1	-	2	2
	중소기업 근로자	1	1	-	9	7

- ※ 예비대상자의 경우 각 기관별 추천대상자 배정세대수의 500%까지 선정합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상기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 10. 16.(금)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특별공급 청약일정 (인터넷 청약 원칙)	2026. 10. 26.(월) 예정 (09:00~17:30)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6. 11. 03.(화)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3. 특별공급 신청 자격

구분	내용															
공급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 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당 첨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 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table><tr><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th></tr><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기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 상기 신청자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기본 사항만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사용 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주택청약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가능하오니, 청약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됨.)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예비대상자의 경우 경쟁 시 탈락할 수 있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 본인이 동일 청약통장으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건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특별공급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형별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련 문의 : 1551-8430
검단 센트레빌 그랑포레